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-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-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 규정(안 제10조)
-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방안 마련(안 제3조 및 제4조)
 - 체육시설 보험 가입 및 읍·면·동 생활체육시설 시설관리 위임
-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 변경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 명시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여가선용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0조에서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 규정에 관한 사항을,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에서는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 변경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여가선용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의 감면 · 감경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, 특히,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오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 요금체계 폐지로 일부 월회원들의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만도 우려되나 수익자 부담원칙과 이용자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